

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취락지구)지정을 위한 의견청취(안)

의 안 번 호	1258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4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건 명 :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취락지구)지정(안)

2. 상정사유

- 가.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 중 해제기준(주택 100호이상)에 미달하는 평창동 260번지 일대외 3개소의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지정기준에 의거 「취락지구」로 지정·관리함으로써
- 나.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취락지구)지정(안)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제한내용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신설	①	취락지구 (평창동)	집단 취락지구	평창동 260일대	취락지구 에 대한 특례 (법 제14조)	15,033	-	취락형태: 계획형
신설	②	취락지구 (부암동)	집단 취락지구	부암동 100일대		12,208	-	취락형태: 자연형
신설	③	취락지구 (부암동)	집단 취락지구	부암동 191-6일대		11,110	-	취락형태: 자연형
신설	④	취락지구 (홍지동)	집단 취락지구	홍지동 129일대		15,395	-	취락형태: 자연형

나. 도시계획사항

- 자연녹지지역/ 개발제한구역/ 취락지구 지정입안

다. 추진경위

- 2005. 12. : 개발제한구역내 「취락지구」 지정관련 학술용역시행
(서울시 : 취락지구지정 대상 도출)
- 2006. 03. 24 : 개발제한구역내 「취락지구」 정비계획통보(서울시)
 - ▶ 우리 구 취락지구 지정대상(4개소)
 - 계획형 취락 1개소 : 평창동 260일대
 - 자연형 취락 3개소 : 부암동 100일대, 부암동 191-6일대, 홍지동 129일대
- 2006. 09. 14 :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계획서 제출(구→시)
- 2006. 09. 22 : 지구단위계획수립전 취락지구지정 선행 지시(시→구)
- 2006. 12. 04 :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요청(공·녹→도·계)
- 2007. 01. 23 :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취락지구)지정(안) 열람공고

4. 열람공고 내용

가. 공고 및 열람

- 도시관리계획안 :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취락지구)지정(안)
- 게재일자 및 게재신문 : 2007. 01. 25자(세계일보, 헤럴드경제)
- 열람공고기간 : 2007. 01. 26 ~ 2007. 02. 08(14일간)
- 열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

나. 의견접수현황 : 5건

- 서울시 : 4건
- 이해관계인(남광영) : 1건
- ※ 제출의견서 : 별도첨부

□ 열람공고의견서 제출현황 및 검토의견

연 번	의견 제출자		제출의견(요지)	검토의견	비 고
	성 명	주소			
1	남광영	종로구 부암동 388-1	홍지동 129일대 취락지구지정(안)에 서 제외된 홍지동 122일대 및 부암 동 388-1일대를 취락지구지정시 추 가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구	추가편입을 요청한 지역은 여건상 지구 내 토지가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져 있 고, 지구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등에 의한 정비 사업시행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 해서는 토지의 정형화가 필요하다, 홍지동 122일대는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연속성이 없고, 부암동 388-1일대는 지목이 "전" 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추가편입은 곤란	미반영
2	서울특별시 (치수과)	-	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사 업으로 영향성검토 실시할 것	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 사전재 해영향성검토 협의시행	반영
3	서울특별시 (공원과)	-	○ 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 별도의견 없음. ○ 평창동 260번지 일대는 도시자연 공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공원으로 복원하여야 할 지역이므 로 사업계획수립전 공원과의 협의 할 것	취락지구 지정 후 사업계획수립전 사전협의	반영
4	서울특별시 (자연생태과)	-	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.	현재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중 (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요청)	반영
5	서울특별시 (환경과)	-	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 대상사업 으로 계획수립전 사전협의하고,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평가 및 자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.	지속가능성평가 사전 협의 및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자문내용은 사업계획에 반 영토록 하겠음.	반영

첨부 : 취락지구지정(안)도 각1부.

■ 관련법규

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】

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제⑤항 : 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⑦항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】
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제⑦항 : 법 제28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.

제1호 :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
※ 취락지구 :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임